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나 무점포판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유통산업에서 무점포판매의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에 반하고, 중소기업인을 보호하는데 미흡하여 유통산업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함.

무점포판매의 확장으로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상거래의 경쟁이 격화되어 익일배송,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배송 서비스 속도 경쟁으로 근로자의 야간노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노동을 2급 발암물

질로 지정하여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수많은 연구에서 야간노동은 뇌·심혈관계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각성 능력을 떨어뜨려 사고유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야간근무로 인한 과로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야근로(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근로)는 제한하여야 함.

이에 무점포판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에 대해서는 물류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함(안 제3장의2(제14조의2) 신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의 물류센터와 배송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제3장의2(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무점포판매

제14조의2(전자상거래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무점포판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이하 “전자상거래등”이라 한다)를 개설하는 자는 물류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전자상거래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

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등의 물류센터와 배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의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에 제2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 2. 제14조의2에 따른 전자상거래등의 개설등록 현황

제4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의2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상거

래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제52조제1항제1호 중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를 “제12조의2제1항제1호, 제14조의3제1항제1호에”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를 “제12조의2제1항제2호, 제14조의3제1항제2호에”로, 같은 조 제3항에 제1의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 2. 제14조의2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상거래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상거래등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무점포판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를 개설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안에 제14조의2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신 설></p>	<p>제3장의2 무점포판매</p> <p>제14조의2(전자상거래등의 개 설등록 및 변경등록) 무점포 판매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 자상거래와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이하 “전 자상거래등”이라 한다)를 개 설하는 자는 물류시설 소재지 의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 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p>
<p><신 설></p>	<p>제14조의3(전자상거래등에 대 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 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등의 물류센터와 배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p>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1. 영업시간의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일 이들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

제45조(보고) ① -----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생략)
<신설>

제49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신설>

③·④ (생략)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

-----.

1.2. (현행과 같음)
2의 2. 제14조의2에 따른 전자상거래등의 개설등록 현황

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의2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상거래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③·④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① -----

-----.

1. 제12조의2제1항제1호, 제14조의3제1항제1호에-----

<p>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p> <p>2. <u>제12조의2제1항제2호에</u>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p> <p>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생략)</p> <p><u><신설></u></p> <p>2. ~ 6. (생략)</p> <p>④ (생략)</p>	<p>-----</p> <p>2. <u>제12조의2제1항제2호, 제14조의3제1항제2호에</u>-----</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u>1의 2. 제14조의2 후단을 위반하여 전자상거래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u></p> <p>2. ~ 6.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